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21652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9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	2209498	정희용의원	2025.03.31.	-제426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'25.6.23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 사소위원회 회부 -제438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 회('26.8.25.) 상정, 축조심사
	2210046	이만희의원	2025.04.23.	-제426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'25.6.23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 사소위원회 회부 -제438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 회('26.8.25.) 상정, 축조심사
	2210081	이만희의원	2025.04.24.	-제426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'25.6.23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

				사소위원회 회부 -제438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'26.8.25.) 상정, 축조심사
	2214130	김선교의원	2025.11.11.	-제430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'25.12.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 사소위원회 회부 -제438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 회('26.8.25.) 상정, 축조심사
	2214756	임호선의의원	2025.12.02.	-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직접 회부('26.1.16.) -제438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 회('26.8.25.) 상정, 축조심사

나. 제43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08.25.)
 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
 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
다. 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09.02.)
 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
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농
 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
 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·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·검역 의무대상에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상 검사원을 명시하고, 국가·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(운영비)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아울러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%에서 90%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%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는 등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·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·검역 의무대상에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상 검사원을 명시함(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).
- 나. 국가 및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제8항).
- 다.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(안 제30조의2 신설 등).
- 라.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%에서 90%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%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8조).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검사원

제9조제8항 중 “제6항의 사업 수행”을 “방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업 수행”으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동물검역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(이하 “검역사”라 한다)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제5조, 제30조, 제33조, 제36조,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, 제44조, 제45조 및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(제31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)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

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및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,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제54조 중 “검역관 및 가축방역사”를 “검역관,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⑦ ~ ⑩ (생 략)

제9조(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) ①
~ ⑦ (생 략)
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
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
수 있다.

⑨ ~ ⑪ (생 략)

<신 설>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) ①
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방
역본부의 운영 및 제6항의 사
업 수행-----
-----.

⑨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2(동물검역사) ① 농림축
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
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
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(이하
“검역사”라 한다)를 채용하여
배치할 수 있다.

②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·
감독을 받아 제5조, 제30조, 제
33조, 제36조, 제38조부터 제41
조까지, 제44조, 제45조 및 제5
2조의4제2항에 따른 동물검역
에 관한 업무(제31조제1호에
해당하는 지정검역물에 관한
업무는 제외한다)를 농림축산
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
수행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
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

제48조(보상금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 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(보상금 등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, <후 단 삭 제>

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9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구제역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가축방역기관장,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

⑤ (생 략)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.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4조(가축방역관 등의 증표)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, <u>검역관 및 가축방역사</u>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	<u>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.</u>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 ⑦ 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⑧ 제6항----- ----- -----. 제54조(가축방역관 등의 증표) -- ----- -----<u>검역관, 가축방역사 및 검역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